

비교과총괄센터 운영 규정(4-1-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비교과총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 및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전공·교양)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보완 및 심화교육을 제공하며 자기 주도적 목표수행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비교과 교육과정 정의) 비교과교육과정이란 재학생의 SPEC & STORY 역량의 조화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정규교육과정(전공·교양) 이외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자기이해·역량강화·체험 등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EC 역량 : 대학생활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 또는 미래 직업생활에 요구되는 역량● STORY 역량 : 생애목표 설정 및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역량 또는 자기주도적 활동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역량 |
|--|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총괄 관리
2.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4. 비교과 프로그램 진단 및 개발
5. 비교과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6.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 이력 관리(DB 관리)
7.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취업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2. 6)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교원 및 연구원) ① 센터에 박사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교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원 및 연구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비교과 교육과정의 편성 원칙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과 교육과정은 SPEC & STORY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PEC형 프로그램 : 전공역량, 학습역량, 취업역량, 창업역량, 외국어역량, 독서·토론역량, 자격증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편성

나) STORY형 프로그램 : 각종 진단검사, 상담, 진로탐색 및 국내봉사, 해외봉사, Residential College, Partnership Training, 동아리, 인턴십, 경연대회, 학술제·공연·전시, 캠프·여행, 예방교육, 건강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편성

제9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주체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과 교육과정의 총괄 운영 관리는 비교과총괄센터에서 하되, 운영주체는 각 프로그램의 운영 담당 행정부서로 정한다.

2. 비교과 교육과정의 각 운영주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나)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편성표 작성

다)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등록

라)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

마)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성과 결과보고서 작성

바) 그 밖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10조(비교과 교육과정 등록)

1. 비교과 교육과정의 각 운영주체는 해당 비교과 교육과정을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록 또는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 및 통보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정규과정 : 매년 2월 둘째 주까지(일괄등록). 이 경우 정규과정은 2년 이상 연속 운영되는 과정

나) 수시과정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전까지(수시등록)

2. 등록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센터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를 심의한다.
3. 비교과 교육과정의 각 운영주체는 본 대학교 마일리지장학금 관리 세부운영지침에 준용하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총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2. 6)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팀장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내 부서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

제14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의 1(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